

피해보상약관

2002. 12. 13. 제정
2003. 10. 23. 개정
2005. 1. 12. 개정
2005. 11. 21. 개정
2006. 12. 8. 개정
2008. 7. 18. 개정
2009. 8. 31. 개정
2012. 9. 17. 개정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공제조합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단계 판매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재화 등을 판매(위탁, 중개,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이하 '**수혜자**'라 한다)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금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공제의 양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철회 등의 기간)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기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한 수혜자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책임을 집니다.

1. 수혜자가 판매원인 경우 재화 등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2.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재화 등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3. 각 호의 계약체결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금지급일로부터 판매원인 경우 3월, 소비자인 경우 14일.
4.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보상약관 제11조의 기간에 따릅니다.
5. 공제의 양도가 발생할 경우 청약철회 기산일은 회사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최초 계약체결일로 합니다.

제3조 (보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제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수혜자가 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가. 다단계판매원이 재고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 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 다. 수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라.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한 때에 한함
 - 마.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바. 수혜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사.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회사로부터 재화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공제조합에게 재화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3. 수혜자가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상인 개별재화 등을 다단계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단, 160만원 미만까지 보상청구 가능)
4. 수혜자가 회사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5. 공제계약이 해지 된 이후에 수혜자가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
6. 피해보상약관 제2조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7.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공제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
8. 수혜자가 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입금계좌 이외의 신용카드 가맹점 및 입금계좌를 이용한 경우
9.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10. 공제조합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래제한 물품을 거래한 경우
11. 구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불충분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12.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

제 4 조 (공제사고의 발생)

수혜자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단, 수혜자가 회사로부터 재화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공제금의 청구)

① 수혜자는 제4조의 사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공제조합 양식)
2. 공제번호 통지서
3. 거래 명세서 또는 수혜자의 재화 구매 사실 입증서류
4. 회사에게 확인한 청약철회 사실 입증서류
(단, 회사가 공제계약 해지로 인하여 청약철회 등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5. 회사에게 재화를 반환한 경우 반환입증 서류
(단, 제품을 미수령 하였을 경우에는 제품 미수령 확인 증빙자료)
6. 기타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② 수혜자가 재화 등을 회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수혜자는 제1항의 서류의 제출과 함께 재화 등을 공제조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공제금 지급액)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제2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 수혜자에게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1.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로서 1인당 공제금 지급한도는 매 3개월의 기간 동안 1천 5백만원
2.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100%로서 1인당 공제금 지급한도는 매 3개월의 기간 동안 6백만원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금액에서 각호의 사항을 차감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명시한 재화 등의 대금환급에 따른 비용공제금.

2. 수혜자가 반품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수령하였을 경우 후원수당 금액 등 기타 회사 및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금액
- ③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지연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공제금 지급 지연사유가 공제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지연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대금환급을 청구하고 3영업일이 지난 후부터 시작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수혜자와 공제조합에 대금환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의 기간(단, 다단계판매업자가 수혜자와 공제조합에 대금환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혜자가 공제조합에 공제금 신청을 할 때까지의 기간)
 2. 수혜자가 공제조합에 공제금 청구를 한 날로부터 공제금 산정기간(10일)을 경과하는 경우 공제금 산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공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단, 공제조합에 상당기간 대규모의 공제금 청구가 접수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제금 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공제금 지급결정 후 3영업일을 경과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 그 3영업일을 경과한 일수도 지연일수에 포함한다.

제 7 조 (공제금의 지급시기)

- ① 공제조합이 공제금청구를 받은 경우, 수혜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공제금 지급에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② 수혜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가 곤란한 경우 법에서 정한 소비자분쟁 조정기관의 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제 8 조 (공제번호의 발급 등)

- ① 회사는 수혜자에게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공제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서류(공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서 또는 구매계약서 등)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부 서류에 대하여 공제조합과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수혜자가 재화 등을 주문하기 위한 대금결제와 동시에 각각의 주문건 별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제번호를 거래내역서 또는 구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수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구매계약서(또는 거래내역서) 및 반품신청서 등에 공제계약의 체결, 공제번호 확인방법 기타 공제사항 등을 기재하여 수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공제조합 가입 및 공제계약 체결 여부의 확인)

공제조합은 수혜자가 회사의 공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계좌번호 또는 가맹점번호 등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구상 및 대위)

- ① 공제조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에 의거하여 수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수혜자는 공제조합이 상기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하고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수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수혜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공제금 청구 기간 등)

- ① 수혜자는 회사 또는 공제조합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약관 제2조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회사에 청약철회 등을 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공제조합에 대해서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조합은 수혜자의 공제금청구 기간을 약관 제2조의 기간 이내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가 수혜자로부터 청약철회 접수 후 대금의 환불 없이 서류 등을 보관함으로써 수혜자의 공제금 청구 기간을 초과시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제조합은 수혜자가 회사에게 청약철회한 날을 공제금청구일로 추정하여 공제금지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의 공제거래 해지 시에는 수혜자는 약관 제2조의 기간 이내에 한하여 공제조합에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수혜자의 공제금 청구 및 철회권)

공제금 청구는 수혜자와 수혜자로부터 공제금 청구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단, 공제금 청구의 철회는 수혜자만이 가능합니다.

제 13 조 (공제조합의 공시)

공제조합은 공시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문 또는 공제조합의 공시사이트 (www.macco.or.kr)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공제금액의 인수)

회사가 수혜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른 공제조합 또는 금융기관과 공제계약,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조합은 다른 공제조합 또는 금융기관이 당해 회사의 공제금액을 인수하도록 당해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공제조합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공제조합 또는 금융기관이 상기 공제금액을 인수한 경우 공제조합은 상기 공제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